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2012년 12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국장 오상균)

가. 제안이유

- 1)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2.8.2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중성)

가. 본 개정안은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상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7호)

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화, 산업화로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 충격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재난을 당한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완화하고자 재난심리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재난이 잦고 이에 따른 심리상담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필요한 상담활동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8 호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2.8.2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추가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비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10.8~10.28)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6조(기금의 용도) ----- ----- 1. ~ 6. (현행과 같음) <u>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u>